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기본법안

검 토 보 고

《다양한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규정》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5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조문별 검토	12
가.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12
나. 정의(안 제3조)	18
다. 아동의 권리 규정(안 제4조)	20
라. 책무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21
마. 특별보호아동 지원(안 제9조)	25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0조)	29
사.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0
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아동정책 총괄·조정권(안 제11조 및 제15조제1항) ..	31
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실태조사·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보장원의 설립·운영(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32

차. 아동의 권리 보장(안 제3장 제19조부터 제43조까지)	40
1) 중점 검토 필요사항	40
2) 출생하여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 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53
3) 보호·돌봄에 관한 권리 및 경제활동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등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60
4) 발달·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및 쉼 권리·놀이 권리(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66
5) 참여에 관한 권리 등(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70
6) 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 지원(안 43조)	75
카. 권리구제(아동권리옹호관의 설치, 친권의 제한 및 진정제도 도입 등)(안 제44부터 제47조까지)	77
타. 부칙 등(안 부칙)	83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5. 5. 2.

(3) 회 부 일 : 2025. 5. 7.

2.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이 분리되어 있고, 개별 법률은 교육·복지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며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음.

아동에 대한 법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 역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는 동시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호자·사회·기업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아동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5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환경, 보호자의 양육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아동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6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
- 사.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 폭력, 학대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안 제19조부터 제43조까지).

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하여 아동권리옹호관을 두도록 함(안 제45조).

자. 이 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Ⅱ. 검토 의견

1. 총괄적 검토

-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등의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권리구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4개의 장과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임.

< 제정안의 구성체계 >

구 분	제정안
제 명	「아동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아동의 권리)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보호자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기업의 책무)
	제9조(특별보호아동 지원)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아동정책의 총괄·조정)
	제1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4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5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6조(아동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17조(아동정책영향평가)
	제18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3장 아동의 권리 보장	제19조(생명과 건강의 권리)
	제20조(출생등록될 권리)
	제21조(생존을 위한 권리)
	제22조(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
	제23조(부모를 알 권리)
	제24조(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

구 분	제정안
	제25조(보호받을 권리)
	제26조(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27조(돌봄에 관한 권리)
	제28조(경제활동에서 보호받을 권리)
	제29조(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0조(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제31조(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
	제32조(발달에 관한 권리)
	제33조(교육에 관한 권리)
	제34조(쉼 권리와 놀 권리)
	제35조(환경에 관한 권리)
	제36조(참여에 관한 권리)
	제37조(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38조(표현에 관한 권리)
	제39조(자유로운 출입의 권리)
	제40조(사법 및 행정 절차 등에서의 권리)
	제41조(체벌 금지)
	제42조(중독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43조(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 지원)
제4장 권리구제	제44조(상담 지원)
	제45조(아동권리옹호관)
	제46조(친권의 제한 등)
	제47조(진정)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보호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닌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명과 건강의 권리 등 아동의 다양한 권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관한 사항 등을 「아동복지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아동 권리의 구제를 위해 새로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권리옹호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 친권의 제한 등을 확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참고로,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0133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양 제정안의 내용은 큰 틀에서 유사하나, 금번 제정안이 아동의 ‘권리’ 부분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보임.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01334호)과의 비교 >

	본 제정안(백설희의원안)	강훈식의원안
목적	아동이 <u>온전한 권리주체</u> 로서 <u>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하여 성장·발달하여 자립할 수 있는 권리</u>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아동의 권리
기본이념	(공통)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 차별 금지, 안전한(안정된) 환경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 · <u>아동은 항상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u> · <u>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생·생존할 권리, 균형있는 성장·발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기회 제공</u>	
기업의 책무	(공통) 경영 전반에 걸쳐 아동 권리 존중·보호 · 사업 및 사회적 활동 수행에 있어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 최소화 · 이들에게 유익한 환경 조성 위한 경영방침 마련 · 공급망 및 협력업체 경영 과정에서도 아동권리 보호 기준 준수 · 법률상 허용되는 아동노동에서 아동의 건강·안전 보장, 학습·성장 기회 저해하지 않는 건전한 노동환경 제공	아동의 권리 존중·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u>35명</u> 이내 위원 · (공통)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경찰청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추가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장 포함 <u>29명</u> 이내 위원
「아동복지법」 관련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친권제한	
아동의 권리	(공통)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권리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아동의 주거권, 돌봄에 관한 권리,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중독 자살예방 관련 국가의 의무 등 추가	

- 한편, 우리나라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법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 권리협약」’이라 함)을 비준한 지 34년이 되었음.

< 「아동권리협약」 개요 >

- (내용)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우리나라 포함 **196개국**이 비준

- 본 협약(전문 및 54개 조항), 선택의정서(비준국이 자율 채택)로 구성

< 협약 주요 내용 >

- (생존) 아동이 기본적인 삶(주거, 영양, 보건 등)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
- (보호)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 (발달)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여가, 문화생활 과 정보,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
- (참여) 아동이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경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우리나라는 본 협약 비준('91.11월) 이후 선택의정서 **2개** 비준('04.9월)

- * 선택의정서 **3개 중 2개 비준** (①아동의 무력분쟁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②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1개 미비준 (③개인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 그간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 제정(1991) 및 전부개정(2004. 2.), 「청소년 보호법」 제정(1997) 및 전부개정(2011.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2004) 및 전부개정(2012. 2.) 등을 통해 아동 관련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여전히 보호의 대상일 뿐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크고, 삶의 질 수준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¹⁾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17년 6.99점에서 2020년 6.80점으로 감소하였고, 긍정정서(행복)는 같은 기간 7.29점에서 7.19점으로 저하되었으며, 우리나라 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국가 중 하위권임.

1) 통계청,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 2022. 12.

<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2018) >

(단위: %)



주: 1) 만 15세를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측정결과임
 2)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0~10점 척도 응답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임
 출처: UNICEF Innocenti,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6(원출처: OECD PISA 자료 활용)

□ 아동의 사망원인 1위로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19년 2.1명에서 2021년에는 2.7명으로 증가하였음.

< 자살률 (2000~2021) >

(단위: 명/1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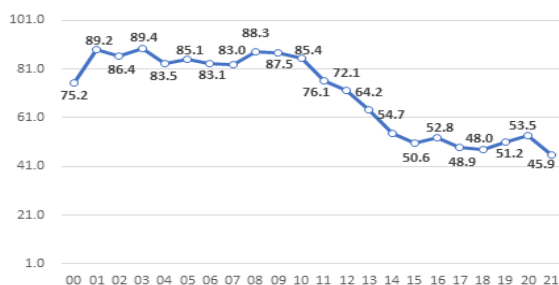


주: 1) 0~17세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해당 연령 인구 10만명 당으로 계산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

□ 그 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발생원인 중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2000~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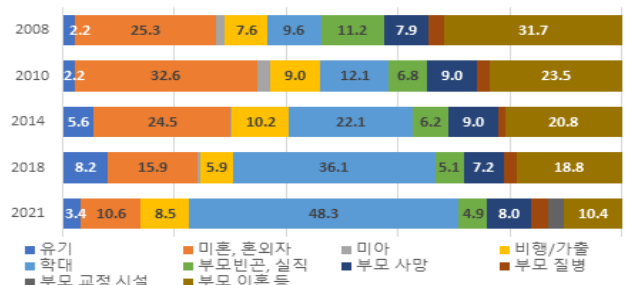
(단위: 명/10만 명)



주: 1) 0~17세를 대상으로 함
 2) 발생률 = (보호대상아동 총계 ÷ 추계인구) × 100,000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2008~2021) >

(단위: %)



주: 1) '08년부터 발생요인 항목 변경('21년 부모교정시설 추가)
 2) 미아, 부모질병, 교정시설은 3% 이하로 값표시하지 않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 이러한 상황이지만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된 현행 법 체계를 보면, 「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으로서²⁾ 아직까지 해당 협약에 근거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현행 「아동복지법」 등 아동 관련 법 체계는 취약아동 등 일부대상에 치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제정안이 마련되는 경우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 아동정책 수립 및 관련 입법의 기본적인 틀로서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그 권리를 신장함에 있어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아동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 방식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 우리 위원회에는 유사한 취지와 내용으로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01334호)도 계류되어 있음.
- 금번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국가·사회의 책무 규정, 아동정책 전반의 기본방향 제시 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본법 제정 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아동정책의 최상위

2) 1989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전세계 196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 비준 후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노력을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권해를 발표한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2월에 7차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임.

규범을 제정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 기존 아동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분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현재 아동 관련 법제는 빈곤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일부 대상에 국한된 측면이 있는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국가·사회적 책무 규정, 아동정책 전반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본법 제정 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및 충분한 논의 필요 ○ 한편, 「아동기본법」은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 아니라,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므로 이 법만으로 업무 관할의 충돌이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청년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청년(19~34세)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9~24세)간 중첩이 있었으나 관할권 논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법무부	○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와 관련, 제정안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권리협약」과 달리 차별시유·영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형태를 불문하는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차별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취지라고 이해되나, 취약계층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 아동 등 중첩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특정계층이 있음을 고려하여 차별사유를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출생등록될 권리’와 관련,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나,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과 관련하여 권리 보장의 형태 및 정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적 논의가 필요 ○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와 관련,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의미가 다소 모호하며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의료행위에 있어 ‘객체로서의 아동’이 강조될 가능성 ○ ‘사법 및 행정 절차 등에서의 권리’와 관련,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선언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사법절차’, ‘성숙도에 따라 고려’ 등의 표현은 다소 포괄적이고,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민법」 제5조),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한(「형법」 제9조) 등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그 법률상 능력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현행법과의 정합성도 고려될 필요

구분	제정안에 대한 의견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와) 법안의 ‘<u>아동권리옹호관</u>’이 지방공무원을 의미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규정된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인력 운영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필요 ○ (민간협력과) 법안의 <u>아동권리보장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내용</u>과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라면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암묵적 강요 등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국가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 불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	○ 현재 여러 법률에서 ‘<u>보호자</u>’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나, ‘보호자’에 교사를 포함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이 유일한바, 보호자의 개념에서 교사를 제외하도록 조정할 필요 ○ <u>아동권리옹호관</u>의 활동 관련,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안은 조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도록 명시할 필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u>아동정책조정위원회</u> 위원 중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중 2인은 아동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한 것에서, ‘아동권리 관련 민간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
한국아동복지협회	○ ‘<u>기본이념</u>’에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음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u>사생활의 명예와 권리</u>’에서도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공질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 필요 ○ <u>친권행사의 제한</u> 관련 아동이 적극적으로 친권상실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u>가정과 유사한 환경</u>’에서의 성장에 관하여 아동학대 등을 고려한 의미 제한 및 전문인력 확보 필요 조항을 둘 필요 ○ <u>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범위</u>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생생활지도도를 포함할 필요 ○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역할 조항을 추가할 필요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 국가 등의 책임, 아동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실현 등을 기본이념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목적규정에서 국가·지자체·보호자·사회·기업의 책임을, 기본이념 규정에서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존중,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호 규정 등을 각각 두고 있음(안 제1조 및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온전한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하여 성장·발달하여 자립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사회·기업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은 항상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4.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아동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생·생존할 권리를 가지며,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금번 제정안에서의 목적 및 기본이념 규정과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큰 틀에서는 유사해 보이고, 다만 목적 규정 중 국가·지자체·보호자·사회·기업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책임을 정한다는 부분과, 기본이념 중 ‘아동은

항상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안 제2조제1호)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규정으로 보임.

< 아동기본법안 및 「아동권리협약」 관련 규정 >

아동기본법안(백선회의원안)	아동권리협약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온전한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하여 성장·발달하여 자립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사회·기업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은 항상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4.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아동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생·생존할 권리를 가지며,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먼저, 안 제1조의 목적 조문에서는 보호자, 사회, 국가 및 지자체 외에 기업의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 추가와 관련된 것임.

기업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³⁾ 영리활동, 고용 등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 및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⁴⁾. 참고로 기업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음, 기본이념 조문(안 제2조) 중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차별금지와 관련된 사항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인 원칙 중 하나로서 특히 아동이 차별받지 아니할 보편적 권리의 주체라는 점은 「아동기본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를 구체화하여 재규정할 필요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도 있겠음. 특히 구체화하는 과정에 ‘언어’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명이 언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3)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발표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그리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2년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을 공동 발표하였음. 유니세프누리집(<https://www.unicef.or.kr/what-we-do/advocacy-for-children/public-private-partnership/childrens-rights-and-business/>)

4) 안 제8조에서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목적 규정과 동일과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일본 「아동기본법」에서 사업주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고용하는 노동자의 직업생활 및 가정생활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고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배건이, 「입법 시 아동중심의 관점에 대한 고찰」,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22, p.38.

-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⁶⁾.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여성인 아동,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 중첩적 차별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 겪는 차별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⁷⁾ 제정안 제9조에서도 특별보호아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체계를 고려하여 기본이념에서도 중첩적인 차별을 겪는 특정계층의 아동들을 예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음,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며,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원가정 보호 원칙’과 관련된 것임.

6)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아동권리협약」 제2조 ①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 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 원가정 보호 원칙 관련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⁸⁾ “이 협약의 서명국은 아동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애정있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며,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하고(…)”⁹⁾

- 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선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보호자가 있는 가운데 아동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8) 우리나라는 입양 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5월 24일 서명하였으나, 현재 가입 비준까지는 완료하지 못하였음.

9) The States signatory to the present Convention,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Recalling that each state should take, as a matter of priority,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child to remain in the care of his or her family of origin,(…) ”

-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2항은 종전의 ‘안정된 가정환경’¹⁰⁾에서 ‘안전한 가정환경’으로 개정(2025. 4. 1.)되어 2025. 10. 2.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다만,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의 의미가 추상적이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분리되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의미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그 외,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이 항상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관련된 것임.

□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의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민법」 제5조), 형사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한(「형법」 제9조) 등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그 법률상 능력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현행법과의 정합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도 필요해 보임.

10) 「아동복지법」(2025. 4. 1. 법률 제20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본 이념)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나. 정의(안 제3조)

- 제정안에서는 ‘아동’과 ‘보호자’ 2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이 정의 규정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함. 참고로 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과는 달리 보호자 정의 중 ‘친권자’를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로 보다 구체화 하였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한편, 제정안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그 외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

< 관련 법률의 연령 규정 >

법률	대상	연령
「아동기본법안」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기본법」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 이에 따라 「아동기본법안」 상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과 중첩되는 연령이 존재하게 되며, 연령에 따라 「아동기본법안」과 「청소년 기본법」 2가지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도 있게 됨. 이러한 경우, 법 적용에 있어 일부 중복의

문제도 있겠으나, 연령 기준을 중첩적으로 마련하여 개별 법령의 특성에 맞게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기본법안」은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 아니라,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므로, 이 법만으로 업무 관할의 충돌이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청년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청년(19~34세)과 청소년(9~24세)간 중첩이 있었으나 관할권 논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는 아동 관련 여러 법률 중 교사를 ‘보호자’의 개념에 포함한 법률은 「아동복지법」 뿐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교사’는 ‘보호자’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 외, 「아동기본법안」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만큼, 아동·보호자 외에 추가적인 정의규정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여타 법률과의 포섭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음¹¹⁾.

11)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 복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마련되는 구조임.

<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체계 예시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정의)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 <u>청소년기본법</u> 」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청소년복지”란 「 <u>청소년기본법</u> 」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다. 아동의 권리 규정(안 제4조)

- 제정안에서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안 제4조).

제4조(아동의 권리) 아동은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

- 이를 규정한 것은 제정안의 목적 조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아동이 온전한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하여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 제3장(제19조부터 제43조까지) 건강권(안 제19조), 출생등록될 권리(안 제20조), 쉼 권리와 놀 권리(안 제34조), 환경권(안 제35조)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해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 규정(안 제4조)를 둘 필요는 적은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강훈식의원안(의안번호 제2201334호)에서도 제2장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제4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라. 책무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책무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보호자의 책무(안 제5조 및 제6조)와 함께 국민의 책무와 기업의 책무(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익,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의 책무) ① 기업은 경영 전반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기업은 사업 및 사회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기업은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경영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은 공급망 및 협력업체의 경영 과정에서도 아동권리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기업은 법률로 허용된 아동노동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특징적인 사항을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제4조¹²⁾)와 보호자 등의 책무(제5조¹³⁾)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그 외 국민의 책무와 기업의 책무를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강훈식의원안에서도 금번 제정안과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의 경우 현행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자체로 하여금 아동의 생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5조제1항),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5조 제6항) 등은 새로이 규정된 내용임. 아울러, 보호자의 책무 규정 중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도록

-
- 12)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13)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노력하도록 한 조항(안 제6조제2항)도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없는 규정임.

□ 먼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부여할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관련 입법례(「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 보호자 외에 국민도 별도 조문화하여 각각에 대해 책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형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서는 기업의 책무로, 공급망 및 협력업체의 경영과정에서도 아동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 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는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강훈식의원안에서는 제정안과 비교하여 다소 포괄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⁴⁾.

< 제정안과 강훈식의원안 기업의 책무 규정 비교 >

제정안	강훈식의원안
제8조(기업의 책무) ① 기업은 경영 전반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② 기업은 사업 및 사회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경영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의 책무) ① 기업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아동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 한편, 일본 「아동기본법」은 제6조(사업주의 노력)에서 “사업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고용하는 노동자의 직업생활 및 가정생활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고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강훈식의원안
④ 기업은 공급망 및 협력업체의 경영 과정에서 아동권리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기업은 법률로 허용된 아동노동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음, 안 제5조5항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것임.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는데¹⁵⁾, 아동과의 소통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이를 학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관을 아동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아동의 권리 등과 관련된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정안에 예비부모 교육을 포함하고,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 안 제6조제2항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부분과 관련된 것임.

- 상기한 바, 이 규정은 현행 「아동복지법」이나 강훈식의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금번 규정이 현실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겠음.

15) 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

마. 특별보호아동 지원(안 제9조)

- 제정안에서는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가족돌봄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을 ‘특별보호아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 및 시책의 수립과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

제9조(특별보호아동 지원) ①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학교 밖 아동, 범죄피해아동, 사법 절차상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가족돌봄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이하 “특별보호아동”이라 한다)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 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보호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여 관련 정책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에도 난민, 장애아동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관련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¹⁶⁾, 당사국이 난민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을 촉진하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16) 「아동권리협약」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 과의 비교 >

제정안(백선회의원안)	아동권리협약
제9조(특별보호아동 지원) ①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학교 밖 아동, 범죄피해아동, 사법 절차상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가족돌봄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이하 “특별보호아동”이라 한다)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 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보호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여 관련 정책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제정안의 취지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강훈식 의원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편, 이주배경아동이나 난민아동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수급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원의 지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규정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등 일부 용어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의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보호종료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장애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아동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용	예산(202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지원	36,283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용 아동이 이용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	46,903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1,03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49,05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의 초기비용 마련 지원	153,189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32,654
저소득층 가사과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	43,453

자료: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설명자료

□ 보건복지부는 이주배경아동·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사법절차상의 아동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범위가 불분명하고,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의 개념도 추상적·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정책방향 제시라는 기본

법의 성격을 고려하여, 취약아동의 유형 등 구체적 내용은 기본법 보다는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목적이 강한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¹⁷⁾이며, 이 경우 「아동복지법」상 ‘지원대상아동’¹⁸⁾에 난민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가족돌봄아동 등 나열된 유형 중 상당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7)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복지의 정의 및 포괄적 방향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청소년복지의 대상(위기청소년 등),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18)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0조)

- 제정안에서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 또는 목적 등에 맞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참고로, 강훈식의원안에서도 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아동의 권리 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아동의 권리 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¹⁹⁾, 제정안이 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청소년 기본법」(제4조)에서도 청소년 육성²⁰⁾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과 같은 방식의 법 규정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 체계상 보편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아동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지·장애·교육·문화 등 개별 아동정책·제도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그를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9)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p.258. 참고로, 「청년기본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20) 「**청소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구 분		제정안
아 동 정 책 기 본 계 획	수립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주기: 매 5년
	내용	○이전 기본계획 분석·평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아동정책 시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
	협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확정·통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시 행 계 획	수립·시행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주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

-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관하여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정안의 내용에 추가로 반영될 필요도 있을 것임.

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아동정책 총괄·조정권(안 제11조 및 제15조제1항)

- 제정안(제11조)에서는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아동정책의 총괄·조정)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 금번 조항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아동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이고 즉시적인 아동정책 수립 및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제15조제1항)에서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정책의 보건복지부장관 총괄·조정권은 이러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임.

<안 제11조 및 제15조제1항 비교 >

제11조(아동정책의 총괄·조정) 아동정책은 <u>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u> 한다.	제15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익 증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u>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아동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	---

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실태조사·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아동 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제10조)²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명칭도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동일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규정함(안 제15조).

「아동복지법」과의 차이를 살펴 보면, 제정안의 경우 그 구성을 35명 이내(「아동복지법」: 25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그 외 아동 대표로서 남, 여 각 1인을 추가하고 민간위원으로 아동 관련 민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21)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제정안
명칭 소속	○ 명칭: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소속: 국무총리
업무	○ 심의 및 조정 - 기본계획 수립 및 <u>변경</u> - <u>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u> - 아동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 부처 간 조정 및 협조
구성	○ 위원장 포함 <u>35명</u> 이내 ○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산 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u>환경부장관</u> · <u>국토교통부장관</u> - <u>개인정보 보호위원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u> <u>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u> - <u>아동대표 남, 여 각 1인</u> -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u>아동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포함하여 위촉</u>)

□ 먼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 봄. 상기한 바, 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와 비교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²²⁾,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면서 아동대표 남, 여 각 1인도 위원 구성에 포함하고 있음.

22) 방송사의 방송내용,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방송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및 관련 규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구별되는 기관임.

제정안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규정(안 제30조) 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도 아동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밀접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미래에 환경을 향유할 주체인 아동이 환경정책에 갖는 관심과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환경부가 아동정책 관계 부처로서 참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식약처는 현재도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외 기관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위원 추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특히, 남, 녀 각 1인씩 아동대표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대표의 추천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아동정책 수립 등에 당사자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의사표명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입법례로 「청소년 기본법」(제10조제4항제16호²³⁾)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에 설치)의 위원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가 현행 2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증가되는바, 회의의 효율성 등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검토도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강훈식의원안에서는 2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23)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④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 아울러, 민간위원과 관련하여 제정안에서는 아동 관련 민간단체 추천 2인을 포함하여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아동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외에 다른 민간 위원들은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위원장이 가장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원의 아동 관련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추천만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위원의 적합성 담보가 어렵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²⁴⁾ 등도 민간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 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는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중 2인은 아동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제정안의 내용을 ‘아동권리 관련 민간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 봄.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우리

24)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나라의 아동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적 성격을 지닌 핵심기구이지만, 모든 국정분야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상시적 개최가 어렵고 이에 따라 아동정책에 대한 면밀한 조정과 심의도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18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따름임²⁵⁾.

□ 제정안에서도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일하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여성가족부 소속(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두면서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등 관련 부처의 차관을 정부측 당연직 위원²⁶⁾으로 하고 있음.

□ 다음, 아동정책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임. 제정안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3년 주기의 아동종합실태조사²⁷⁾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16조(아동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이 처한 환경과 상태, 보호자와 양육, 교육, 발달 등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역할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이를 아동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5) 다만, 2008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미구성 및 운영 중단된 시기도 있었음(출처: 보건복지부)

26)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측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장

27)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의 규정은 「아동복지법」의 규정과 유사하나, 주요 차이점을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아동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물 활용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 외, 제정안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달리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아동복지법」 제11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단서)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정책 전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려는 제정안의 기본법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제정안 부칙 제4조제1항에서 현행 「아동복지법」 제11조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의 구체적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 제정안(제17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7조(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을 위한 아동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구축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규정은 현행 「아동복지법」(제11조의2²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이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구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안 제17조제2항)되어 있음.
- 제정안은 아동 관련 법제와 정책 전반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아동 관련 데이터 수집·구축 및 관리가 현행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²⁹⁾과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임.

28)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다음, 아동권리보장원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안 제18조)과 관련하여,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규정을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아동정책 수립 등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라면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암묵적 강요 등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국가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아동기본법」이 제정(2022. 6.)되어 총리대신 직속기관·내각부 외청으로 아동가정청이 설치·운영 중임(2023. 4.). 아동 정책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우리나라도 아동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진 기관 창설 필요성과 아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본 아동가정청의 운용 방향 및 경험을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차. 아동의 권리 보장(안 제3장 제19조부터 제43조까지)

1) 중점 검토 필요사항

□ 제정안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아동을 강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금번 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임.

□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갖는다고 보고 있음.

‘생존권’은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발달권’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 놀이, 여가를 누릴 권리와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임.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적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함. ‘참여권’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³⁰⁾.

□ 제정안은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를 참조하여 생존과 건강 등에 관한 권리, 다양한 영역에서 보호받을 권리, 발달에 관한 권리, 참여에 관한 권리 등 생활영역을 망라³¹⁾하여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30) 배건이,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p.81에서 재인용

31) 참고로, 강훈식의원안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아동권리협약」 과의 비교 >

제정안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생명과 건강의 권리)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0조(출생등록될 권리) 아동은 출생 후 가능한 신속히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생존을 위한 권리) ① 아동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생존에 필요하고 적절한 의식주와 발달단계에 따른 적정수준의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이 보호자의 사망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 ① 아동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은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	

현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23조(부모를 알 권리)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4조(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3. 당사국은 국내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대, 방임, 착취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③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침해 및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감독하며 필요시 개입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안전이 확보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입양은 공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입양대상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과 차별받지 아니하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돌봄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호·양육되고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을 지며,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경제활동에서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아동은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과 휴식 등 기타 권리에 지장을 주는 과도하거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자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아동의 근로자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는 불합리하게 상속된 채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①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② 아동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는 아동의 잊혀질 권리가 실현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 아동은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발달에 관한 권리)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33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인격을 존중받으며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보호자와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 열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쉼 권리와 놀 권리) ① 아동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발달특성에 맞는 놀이 활동 및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건강한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에 관한 권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각자 능력과 소양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질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인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존·발달할 수 있도록 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아동이 권리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참여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개인이 가지는 신체·정서·경제·문화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보호자는 모든 아동이 합리적 의사결정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아동의 의사를 발달단계에 따라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구성원은 기관운영, 창의적 활동 등에 대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참여의식을 고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총회 등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된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또는 쟁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아동도 차별 없이 참여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아동은 의사결정 및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고, 보호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수단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 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8조(표현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공질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글, 그림, 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존중하고 아동이 매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39조(자유로운 출입의 권리) 아동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사법 및 행정 절차 등에서의 권리) ① 아동은 사법절차에서 의사표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

의 의견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형사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법률대리인,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인 등을 통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범죄 등에 연루된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12조)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41조(체벌 금지)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양육, 보호, 교육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중독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알코올, 약물, 도박, 스마트폰 등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

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아울러,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아동의 해당 권리를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일부 권리에 관해서는 아동의 권리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임을 병기하거나, 혹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아동에 관한 책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의 권리 보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 책임으로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것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취지로 이해됨.

<아동의 권리와 국가·지자체 책임 병기>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규정 형식>
제21조(생존을 위한 권리) ② 아동이 보호자의 사망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한다.</u>	제26조(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안전이 확보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는 아동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입양은 공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u>국가</u> 는 입양대상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돌봄에 관한 권리)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을 지며,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u>국가</u> 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과 차별받지 아니하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경제활동에서 보호받을 권리) ③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u> 는 아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아동의 근로자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환경에 관한 권리) ① <u>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u> 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각자 능력과 소양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생활환경을 조성
제29조(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u>국가</u> 는 불합리하게 상속된 채무로부터 아	

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③ 국가는 아동의 잊혀질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에 관한 권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쉼 권리와 놀 권리)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건강한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참여에 관한 권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참여의식을 고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총회 등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된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또는 쟁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아동도 차별 없이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사법 및 행정 절차 등에서의 권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범죄 등에 연루된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체벌 금지) ② 국가는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질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인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존·발달할 수 있도록 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아동이 권리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중독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알코올, 약물, 도박, 스마트폰 등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아동 및 그 밖에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 및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직업훈련, 주거, 자산 형성,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자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정안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법안에 어떤 내용과 범위를 규정할지와 관련하여, 현실적 수용 여건과 아동의 권리 신장 및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아동의 개별적 권리를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주에서 보장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나, 개별법에 별도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 특별히 기본법에 재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제정안의 아동의 권리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권리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는 방식이 정책 시행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이 있고, 국내 법제 경향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임.

< 아동기본법안과 헌법 유사조항 비교 >

아동기본법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아동기본법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헌법 (현행)
제31조(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 <u>아동은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u>	제11조(보호권) ⑤ 아동은 <u>사생활을 보호 받고 인격 또는 명예를 침해받거나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u>	(제17조) <u>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u>

아동기본법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아동기본법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헌법 (현행)
제33조(교육에 관한 권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제12조(발달권) ② <u>아동은 인격, 재능 및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 ③ <u>아동은 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노릴 권리를 가진다.</u>	(제31조) ① <u>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
제35조(환경에 관한 권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질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인 <u>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존·발달할 수 있도록 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u>	제12조(발달권) ④ <u>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권리를 가진다.</u>	(제35조) ① <u>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38조(표현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공질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글, 그림, 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u>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u>		(제21조) ① <u>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u>

2) 출생하여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 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면서(안 제19조), 출생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등록될 권리(안 제20조) 및 친생부모를 알 권리(안 제23조)를 명문화함.

아울러,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의식주 및 발달단계에 따른 적정 수준의 부양을 받을 권리를 규정(안 제21조)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안 제22조) 및 주거에 관한 권리(안 제24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19조(생명과 건강의 권리)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0조(출생등록될 권리) 아동은 출생 후 가능한 신속히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생존을 위한 권리) ① 아동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생존에 필요하고 적절한 의식주와 발달단계에 따른 적정수준의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이 보호자의 사망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한다.

제22조(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 ① 아동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은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23조(부모를 알 권리)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24조(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먼저,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6. 11. 28. 95헌바1 결정 등) 아동 또한 당연히 생명권을 가지며, 건강권 또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및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제3항 등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아동에게도 인정됨.

□ 다음, 출생등록될 권리(헌 제20조)는 「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³²⁾되어 있는 권리로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기본권으로 인정³³⁾한 바 있음. 사회가 복잡·다양해질수록 개인이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신분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를 「아동기본법안」에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한 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의 출생등록권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 대한민국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³⁴⁾와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임.

32) 「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33)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75 결정)

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과 관련하여 권리 보장의 형태, 권리 보호의 정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의 체계정합성,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³⁵⁾.

□ 다음, 친생부모에 관하여 알 권리(안 제23조)는 입양 등으로 인해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역시 「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다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³⁶⁾」(「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준용³⁷⁾)에서는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통해 입양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 또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서도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 또한 보장되고 있기도 함.

35)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안 3건(의안번호 제2204526호, 제2206753호, 제2208000호)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3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개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준용한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증서공개청구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 생존을 위한 권리(안 제21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안 제22조) 및 주거에 관한 권리(안 제24조)에 관하여 살펴 봄.

□ 첫째, 생존을 위한 권리의 내용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생존에 필요하고 적절한 의식주와 발달단계에 따른 적정수준의 부양을 받을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는바, 이는 아동의 생존을 위한 제반 여건의 구비 의무를 부모 등 보호자(안 제21조제1항) 및 국가·지자체에게 부여(안 제21조제2항)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보호받을 권리’(안 제25조³⁸⁾) 및 ‘돌봄에 관한 권리’(안 제27조³⁹⁾)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38) 제25조(보호받을 권리) ②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39) 제27조(돌봄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호·양육되고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둘째, 의료서비스는 아동의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나아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도 필수적인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 동해시 등의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를 보면, 건강에 관한 권리로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과 부모를 위한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⁴⁰⁾하고 있음.

< 보건의료시설 이용권 인정 조례 >

지자체명	조례명
부천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청주시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
동해시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성남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

□ 다만, 안 제22조제2항에서 “아동이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부모의 개입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하여 적절한

40) 「아동권리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서비스를 받을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되나,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이 조항이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방치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양육 의무를 해태한 여러 사례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아동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아동에게 불필요한 의료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요건의 명시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배제하고 의료전문가만의 관점에서 각종 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의료·아동·사회 복지·특수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법원, 변호사 등 다층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 외, 아동이 의료행위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에 관한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부분(안 제22조제3항)은 안 제37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⁴¹⁾’ 부분과 일부 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제정안에 이와 같은 문언만이 명시될 경우, 의료행위에 있어서 ‘객체로서의 아동’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정책에도 아동의 권리주체성이 역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1) 제37조(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아동은 의사결정 및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고, 보호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수단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셋째, 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는 생존권 중 ‘생존에 필요하고 적절한 의식주’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아동이 주로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의 안전성·안정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한편, 제정안은 ‘환경에 관한 권리’(안 제35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로 하여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⁴²⁾을 아동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42) 참고로 헌법 제35조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보호·돌봄에 관한 권리 및 경제활동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등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 제정안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대, 방임, 착취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안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아동의 권리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안 제26조), 돌봄에 관한 권리(안 제27조)와 함께, 경제활동(안 제28조)·책임 없는 채무(안 제29조)·디지털 환경(안 제30조)에서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안 제31조)를 규정함.

제25조(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대, 방임, 착취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③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침해 및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감독하며 필요시 개입하여야 한다.

제26조(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안전이 확보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입양은 공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입양대상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과 차별받지 아니하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돌봄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호·양육되고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을 지며,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경제활동에서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아동은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과 휴식 등 기타 권리에 지장을 주는 과도하거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아동의 근로자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는 불합리하게 상속된 채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①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② 아동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는 아동의 잊혀질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 아동은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먼저, 아동은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만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
이므로,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아동의 권리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이는 부모의 체벌 근거로 여겨지던 「민법」의 징계권 조항⁴³⁾이 삭제(2021. 1. 26.)되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언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폭력 뿐만 아니라 학대로부터의 보호 또한 규정하고 있는바, 총괄적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학대 피해 아동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기본법에서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음.

□ 다만, 체벌 금지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분은 제정안에서 별도의 조문 (안 제41조⁴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안 제25조의 ‘보호받을 권리’에

43) 구(舊)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4) 제41조(체벌 금지)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양육, 보호, 교육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함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그 외, 방임⁴⁵⁾, 착취 및 유해한 환경⁴⁶⁾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경우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성폭력’의 명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 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 제정안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는 아동이 원칙적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규정하면서, 입양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등도 명시하고 있음.

□ 상기한 바, ‘원가정 보호 원칙’은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제정안의 ‘기본이념’(안 제2조제4호)에서 이를 보완하여 무조건 ‘태어난 가정’이 아니라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안 제26조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내용 또한 일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 제정안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호·양육되고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돌봄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7조).

45)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3호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 하여, ‘방임’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6)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제8호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함.

- 이는 안 제24조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적절한 주거 환경’이나 안 제33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폭넓은 ‘아동의 돌봄 여건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국가·지자체 및 보호자가 이를 위하여 각각 책임을 다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문언상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될 여지도 있겠음.
- 다음, 제정안에서는 아동이 유해한 노동에서 보호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8조).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조는 「최저연령 협약(1973년)」에서 고용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정했으나, 제182조(1999년)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항목을 추가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노예제, 매춘, 마약 밀매, 무력 분쟁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비준하였음.
-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문), 제정안에서는 아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및 아동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공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음, 제정안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미성년자인 아동이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로 보이고, 이는 아동의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13일 「민법」 개정⁴⁷⁾전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⁴⁸⁾나 한정승인⁴⁹⁾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⁵⁰⁾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민법」 개정⁴⁷⁾에 따라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임.

4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8)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함.

49)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함.

50)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함.

- 다음, 제정안은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3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3~9세 이용자 89.4%, 10대 이용자 99.5%), 디지털 환경은 쉽게 새로운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반면, 유해 정보 노출,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므로,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큰 측면이 있음⁵¹⁾.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에서는 아동이 디지털 환경의 악영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과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국가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감독·관리, 디지털 권리 교육 강화 등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아동의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안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아동권리협약」 제16조에 따른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51) 초록우산 연구보고 2024-4,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2024. 10.

□ 그 외, 안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코올, 약물, 도박, 스마트폰 등 중독 예방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도 아동에 대한 ‘보호권’ 범주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발달·교육 환경에 관한 권리 및 쉼 권리·놀이 권리(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제정안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쉼 권리와 놀 권리, 사회적 생활환경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2조(발달에 관한 권리)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3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인격을 존중받으며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보호자와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쉼 권리와 놀 권리) ① 아동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발달특성에 맞는 놀이 활동 및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건강한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에 관한 권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각자 능력과 소양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질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인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존·발달할 수 있도록 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아동이 권리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구체화한 발달에 관한 권리(안 제32조)와 함께, 헌법 제31조⁵²⁾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안 제33조) 및 헌법 제35조⁵³⁾의 환경권(안 제35조)이 아동에게도 당연히

5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3)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장됨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됨.

□ 아울러 쉼 권리와 놀 권리(안 제34조)의 경우 아동에게 휴식과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⁵⁴⁾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등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판시⁵⁵⁾한 바 있음.

□ 쉼 권리 및 놀 권리가 법제화될 경우, 실제 가정 등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쉼 권리 및 놀 권리와 부모의 자녀양육권 등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⁵⁶⁾도 있는바, 쉼 권리 및 놀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하겠음. 관련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아동의 권리(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⁵⁷⁾한 바 있음.

54) 이완정,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쉼 권리」,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릴레이 아동권리포럼(제3회) 주제발표자료, 2022. 8. 4.

55)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결정)

56) 정기상,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20, p.200.

57)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바, 학생은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헌재 2000. 4. 27. 98헌가16, 판례집 12-1, 427, 455-456 참조),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결정)

□ 그 외 아동과 밀접한 생활세계인 보육 및 교육과정 마련 시 아동의
 쉼 권리와 놀 권리에 대한 배려 규정이 「아동기본법」에 필요
 하다는 의견⁵⁸⁾이 있음.

58) 배건이,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10. p.162.

5) 참여에 관한 권리 등(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 제정안은 아동의 의사결정주체로서의 참여권(안 제36조),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안 제37조),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안 제38조)와 함께, 특정 영역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출입의 권리(안 제39조), 사법 및 행정 절차 등에서의 권리(안 제40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36조(참여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개인이 가지는 신체·정서·경제·문화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보호자는 모든 아동이 합리적 의사결정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아동의 의사를 발달단계에 따라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구성원은 기관운영, 창의적 활동 등에 대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참여의식을 고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총회 등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된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또는 쟁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아동도 차별 없이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아동은 의사결정 및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고, 보호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수단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표현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공질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글, 그림, 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존중하고 아동이 매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자유로운 출입의 권리) 아동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사법 및 행정 절차 등에서의 권리) ① 아동은 사법절차에서 의사 표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형사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법률대리인,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인 등을 통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범죄 등에 연루된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먼저, ‘참여에 관한 권리’(안 제36조)는 「아동권리협약⁵⁹⁾」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 의사결정주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아울러,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는바(안 제37조), 이는 아동이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안 제22조제3항)에서 구체화되기도 하였음.
- 그 외, 아동의 ‘표현에 관한 권리’(안 제38조)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⁶⁰⁾을 아동에게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다음, 제정안에서 특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출입의 권리’(안 제39조)에 관한 부분임.
- 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아동’의 연령 범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범위 연령에 모두 포함되어 이는 기본법안에 포함시키지

59)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60)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않아도 「청소년 보호법」의 반대해석상 당연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4.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다음, 아동이 ‘사법절차⁶¹⁾’라는 특정 영역에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권리 등(안 제40조)에 관하여 살펴 봄.

61) 안 제40조의 조 제목은 ‘사법 및 행정 절차 등에서의 권리’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사법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주로 성범죄 등의 경우, 아동이 피해자로 증언을 할 때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⁶²⁾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재판절차에서는 직접 법정 출석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⁶³⁾ 아동친화적 사법절차 마련에 노력을

- 6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 미만 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⑥ (생략)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략)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 미만 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망
 - 나. 외국 거주
 -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 라. 소재불명
 -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의2(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⑤ (생략)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제정안에서, 아동이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아동 인권 존중 등의 책임을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변호사 등의 적절한 지원 제공, 연령에 맞는 적합한 방식의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안 제40조의 경우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이나, ‘사법절차’, ‘성숙도에 따라 고려’ 등의 용어는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민법」 제5조⁶⁴⁾),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한(「형법」 제9조⁶⁵⁾) 등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그 법률상 능력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현행법과의 정합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⁶⁶⁾임.

⑥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19세미만피해자등은 제1항의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및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중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64)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65)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66) 그 외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인’은 ‘신뢰관계인’, ‘연루된’은 ‘아동이 사건 피의자인 경우’ 등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음.

6) 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 지원(안 제43조)

- 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43조).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보호조치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빈곤아동 등도 포함하고 있음.

제정안	현행 「아동복지법」
제43조(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아동 및 그 밖에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 및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직업훈련, 주거, 자산 형성,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자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⁶⁷⁾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빈곤아동 등을 포함하여 자립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에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각 대상 아동별 특성에 기반한 수요조사 및 재정 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겠음.

카. 권리구제(아동권리옹호관의 설치, 친권의 제한 및 진정 제도 도입 등)(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아동의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아동권리옹호관을 두도록 하고(안 제45조), 국가에 대하여 친권 상실 및 후견 등 제도의 적절한 시행 책임을 부과하며(안 제46조), 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등의 진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7조).

구 분	제정안
상담지원	○ 국가와 지자체: 아동 연령별 상담, 멘토링 지원
아동권리 옹호관	○ 명칭: 아동권리옹호관 ○ 소속: 지자체 ○ 임무 - 아동권리 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시정 등 개선안 권고 -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요구
친권의 제한	○ 국가로 하여금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상실 제도 등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할 책임 부과 ○ 지자체장이나 아동권리보장원장 등의 임시 후견인 역할
진정	○ 주체: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먼저, 아동권리옹호관 설치에 관하여 살펴 봄.
- 아동권리옹호관 제도는 행정권력의 감시 및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아동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진정 제도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2025년 7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112개 기초 지자체 (교육청 조례 2개 포함 시 114개)에서 아동권리옹호관 또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기도 함.
- 한편, 제정안에서는 아동권리옹호관을 지자체에 두고 있는데, 행정 권력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 아동인권보호수단으로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됨.
- 아울러, 아동권리옹호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선권고, 개선권고 이행 실태 점검 등의 사항과 함께 연차 및 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결격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인적 구성에 대한 신뢰성을 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 아동권리옹호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동권리 옹호관이 지방공무원을 의미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규정된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인력 운영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해당 자치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⁶⁸⁾)에서는

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면서,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2⁶⁹⁾)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권리옹호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운영비·회의 참석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4억 1,500만원(연평균 2억 8,300만원⁷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다음, 친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살펴 보면, 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후견인 선임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	현행 「아동복지법」
제46조(친권의 제한 등) ① 국가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소재불명, 면접교섭의 지속적 거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 아동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상실 제도 등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아동에게 후견을 통해 적절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70) 아동권리옹호관(아동권리옹부즈퍼슨, 아동권리지킴이 등 포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5명인 위촉위원으로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결과임.

② 국가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아동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제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다만, 제정안(제46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지자체장, 아동권리보장원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함.
-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⁷¹⁾)에 따른 임시후견인은 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가 제기된 후, 법원이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처럼 임시후견인제도의 선임 주체 및 절차 측면에서 제정안과 현행법이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제도가 정합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제정안은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제정안에서는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7조).
- 한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71) 「아동복지법」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 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제 <2020. 12. 29.>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당한 경우,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어⁷²⁾ 이를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 조사·구제 및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수행⁷³⁾하고 있어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는 의견이고, 법무부는 ‘진정’을 통하여 제정안에 따른 각종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권리의 침해 또는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부칙에서 달리 위 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진정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차별행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는 의견임.

7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7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타. 부칙 등(안 부칙)

- 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경과조치 및 현행 「아동복지법」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의 삭제·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의 내용에 관해서도 경과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다른 법률의 개정의 누락 사항 유무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겠음.

< 다른 법률의 개정 추가 필요 부분 >

「아동복지법」	<u>「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인용</u> <u>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u>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u>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u>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2. <u>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u> <u>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u>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u>, 아동복지 관련 법인·단체·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u>「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인용</u> <u>제5조의2(실태조사)</u>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u>「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u>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제20886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u>제5조의2제3항도</u> 마찬가지로) <u>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u>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생략) 3. <u>「아동복지법」 제10조 제3항제2호의 위원</u>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u>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7. <u>「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u>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법률 제20846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5. 3. 25. 제정, 2026. 3. 26. 시행)	제6조(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u>「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u>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u>「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u>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00